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02,513,624	12,075,409
일반회계	368,188,724	11,045,662
특별회계	34,324,900	1,029,747
기타특별회계	34,324,900	1,029,747
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2,207,297	66,219
섬진강댐특별회계	6,874,283	206,228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4,392,300	131,769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	6,951,854	208,55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08,580	15,257
기반시설특별회계	83,131	2,49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183,046	365,491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24,409	33,732

제 2 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7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7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8,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5,022,289천원」과 같다.

제 6 조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7 조 2017년도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 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한다.